

2022년도 평창군 예산안

의안 번호	423
----------	-----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2년도 평창군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22년도 평창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560,3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23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162백만원이 증액된 506,028백만원, 특별회계는 12,925백만원이 감액되어 54,288백만원 임.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40,649백만원, 세외수입 15,239백만원, 지방교부세 283,413백만원, 조정교부금 8,50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1,098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128백만원 임.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81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9,540백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5,934백만원 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11,499백만원(예비비 3,000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30,43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4,09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52,699백만원, 재무활동 16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427백만원 임.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7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0조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60,316	528,079	32,237	6.10	
일반회계	506,028	460,866	45,162	9.80	
특별회계	54,288	67,213	△12,925	△19.23	

2. 일반회계

■ 세입			506,028백만원
○ 지방세			40,649백만원
· 주민세	1,173	· 재산세	15,281
· 자동차세	5,383	· 담배소비세	4,195
· 지방소비세	7,341	· 지방소득세	6,471
· 지난년도수입	805		
○ 세외수입			15,239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1,143	· 사용료수입	1,617
· 수수료수입	3,177	· 사업수입	108
· 징수교부금수입	1,239	· 이자수입	886
· 재산매각수입	380	· 자치단체간부담금	250
· 기타수입	5,718	· 지난년도수입	260
· 과징금	23	· 이행강제금	50
· 변상금	23	· 과태료	225
· 부담금	140		
○ 지방교부세			283,413백만원
· 보통교부세	261,616	· 부동산교부세	21,797
○ 조정교부금			8,501백만원
· 일반조정교부금	8,301	· 특별조정교부금	200
○ 보조금			151,098백만원
· 국고보조금	72,722	· 균특보조금	6,908
· 기금보조금	27,706	· 도비보조금	43,762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12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7,000	· 융자금원금수입	128

▣ 세 출 ----- 506,028백만원

○ 정책 사업 ----- 411,499백만원

○ 재무 활동 ----- 30,432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 64,097백만원

【경비성질별】

○ 인 건 비 ----- 60,372백만원

○ 물 건 비 ----- 35,702백만원

○ 경 상 이 전 ----- 173,892백만원

○ 자 본 지 출 ----- 202,148백만원

○ 보 전 재 원 ----- 2,315백만원

○ 내 부 거 래 ----- 28,479백만원

○ 예 비 비 맞기 타 ----- 3,120백만원

【기 능 별】

○ 일반 공공 행정 ----- 28,117백만원

○ 공공질서및안전 ----- 17,430백만원

○ 교 육 ----- 6,967백만원

○ 문 화 및 관 광 ----- 64,579백만원

○ 환 경 ----- 41,107백만원

○ 사 회 복 지 ----- 94,289백만원

○ 보 건 ----- 10,551백만원

○ 농 림해양수산 ----- 99,405백만원

○ 산업·중소기업 ----- 17,547백만원

○ 교 통 및 물 류 ----- 17,285백만원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 41,154백만원

○ 예 비 비 ----- 3,000백만원

○ 기 타 ----- 64,597백만원

3. 특별회계

회계별규모	54,288백만원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052백만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1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39백만원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05백만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24,721백만원

세입	54,288백만원
○ 세외수입	8,814백만원
· 사용료수입	7,006
· 사업수입	1,080
· 기타수입	70
· 부담금	525
· 수수료수입	3
· 이자수입	80
· 지난연도수입	50
○ 보조금	19,540백만원
· 국고보조금	5,214
· 도비보조금	8,277
· 기금보조금	6,049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93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000
· 전입금	23,934

▣ 세 출 ----- 54,288백만원

- 정 책 사 업 ----- 52,699백만원
- 재 무 활 동 ----- 162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 1,427백만원

【경비성질별】

- 인 건 비 ----- 1,381백만원
- 물 건 비 ----- 439백만원
- 경 상 이 전 ----- 13,907백만원
- 자 본 지 출 ----- 38,419백만원
- 보 전 재 원 ----- 100백만원
- 내 부 거 래 ----- 42백만원

【기 능 별】

- 환 경 ----- 50,409백만원
- 사 회 복 지 ----- 508백만원
- 산 업·중 소 기 업 ----- 739백만원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 1,205백만원
- 기 타 ----- 1,427백만원